양도소득의 감면정책과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규정을 중심으로-

전 재 원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I. 양도소득세 감면의 의의

1. 조세감면제도의 개요

조세감면규제법은 1965년 제정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맞추어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98년 12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법 명칭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고 이를 영구법체계로 전환하였고, 조세감면 등이 기득권화 되었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감면제도별로 일몰시한을 규정하게 되었으며 조세감면을 세출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운용하고 조세감면의 효과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조세지출예산의 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정책적인 목적에서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지원은 과세불형평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조세부담을 지우도록 과세기간별로 감면한도(개인 : 1억원, 법인 : 50%)를 두고 있으며, 미등기자산에 대하여는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감면을 배제한다.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일정률의 세금을 경감해 주는 감면제도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중 감면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세액 한도 내에서 과세를 유보하였다가 대체취득자산 양도시에 한꺼번에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다.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유형에는 이월과세와 협의의 과세이연

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이월과세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종전 사업용 고정 자산 등)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 등(신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취득시기로 본다.

나. 협의의 과세이연

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새로운 고정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과세시에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규정에는 ⅰ)중소기업의 사업전환, ⅱ)대도시 내 공장지방이전, ⅲ)수도권 내 법인본사 지방이전, ⅳ)10년 이상 경영목장 이전, ⅴ)5년 이상 가동공장 이전, ⅵ)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 지원등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의 성격

가. 조세정책법적 성질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중과 및 제한에 관한 것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조세의 기능에는 첫째, 국고조달기능, 둘째, 사회정책적 기능(즉, 소득재분배 기능), 셋째는 경제정책적 기능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원제도의 만성화 또는 기득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제도별로 일몰기한을 명문화하는 방향(‘조

세특례의 일몰성'을 말함)으로 운용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나. 조세특례의 기본법적 성질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일반세법에서는 조세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모든 조세특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괄하여 규정함을 말한다.

3. 조세특례의 종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 직접특례에는 비과세제도, 소득공제제도, 익금불산입관련 제도, 세액공제제도, 세액감면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고, 국고의 무상대부의 효과를 지닌 간접특례에는 준비금제도, 충당금제도, 과세이연 및 이월과세제도 등을 두고 있다.

Ⅱ. 양도소득세의 주요 감면제도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주주에 대한 지원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② 개인 및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③ 특수관계없는 개인이 창업후 3년내(전환후 3년내 포함)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취득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2.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통합하는 경우에는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한다.

① 사업장별로 주된 자산(업무무관자산 및 유휴토지 제외)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②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존속(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며

③ 취득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통합일 현재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 이상일 것

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가. 지원대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나. 지원내용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한다. 이 경우 전환법인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여기에서 '사업양수도 방식'이란 법인설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사업장 순자산가액(시가)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후 3월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등 감면

가. 지원대상

5년이상 중소기업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물류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지원내용

①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②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

액으로 전환사업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한다. 여기에서 '과세이연'되는 금액의 계산은 전환사업의 건축물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본래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재래사업장 이전에 대한 지원

가. 지원내용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가 2000년 12월 31일 까지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기존사업장을 유통단지로 이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한다.

나. 지원요건

⑴ 재래시장내 사업장 이전시

① 재래시장구조개선 지원계획에 따라 10인이상이 공동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② 이전후 2년내에 재래시장내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양도일로부터 1년(사업장 신축은 3년)내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⑵ 유통단지로의 이전

이전후 2년내 종전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종전사업장을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유통단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6.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가. 지원내용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매매사업용 토지등 제외)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동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한다.

나. 감면세액추징

양도한날부터 3월이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내 당해사업을 폐지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여기에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ⅰ)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 및 그 이자, ⅱ)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iii)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말한다.

7.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 등의 지원

가. 지원대상

3년이상 사업(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한다.

나. 지원요건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97.6.30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97.7.1～2000.12.31에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당좌차월 제외)를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은 감면이 배제되었다. 이때 금융기관부채 상환기한은 부동산 양도일이 i)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2월 23일까지인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고, ii) 1998년 2월 24일부터 1998년 9월 30일까지인 경우에는 양도한 날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iii) 1998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3월이 경과하기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반드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부채비율이 부동산양도후 3년내에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③ 부동산양도후 3년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

④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8. 현물출자에 대한 지원

가. 감면요건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감면내용

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출자지분의 양도시까지 이연과세(압축기장충당금)하고
②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신설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의 처분시까지 이월과세하며
③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 감면세액의 추징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설립된 신설법인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사업의 폐지기준'은 ⅰ)현물출자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또는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와 ⅱ)6월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중복 또는 불용자산양도에 대한 지원

가. 감면내용

3년이상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합병,사업양도, 사업양수로 인한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한다.

나. 감면요건

①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기업구조조정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
②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2000.12.31이전에 양도
③ 기업집단이 새로운 사업진출 또는 기업결합의 제한대상이 아닐 것
④ 다음의 방법으로 양도할 것
ⅰ)합병 : 중복자산을 2000.12.31까지 양도할 것
ⅱ)사업양도 : 자산(매출)총액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부문 또는 양도가액 50억원 이상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ⅲ)기업인수 :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소유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한 후 중복불용자산을 2000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할 것
ⅳ)사업양수 : 사업양수후 중복·

불용자산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것

⑤ 양도대금을 기업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것

다. 감면세액의 추징

①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일부터 3월이내에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②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1년내에 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전액을 추징한다.

③ 부동산양도일부터 3년내에 사업 폐지하거나 해산시 전액추징

④ 부채상환후 3년내에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비율만큼 추징한다.

10.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 까지 양도시 지원되며, 대도시내의 공장양도대금으로 지방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고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한다.

11.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수도권내의 법인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지원되며 수도권내의 법인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양도하고 동대금으로 수도권외 지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고 수도권외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한다.

12. 영농구조의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

영농조합법인, 영어(營漁)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설립을 위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3.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시 지원되며 구목장을 양도한 대금으로 신목장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고, 신목장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한다.

14.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시 지원되며 구공장을 양도한 대금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고, 신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한다.

15.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시 지원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채권수령시 35%)를 감면한다.

i) 공공사업용 토지(공특법 적용)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ii)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iii) 또는 토지수용법등 법률에 의한 토지등이 수용되어 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에 한정한다.

16.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① 개발촉진지구내 사업 및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

② 관광단지・산업단지 및 유통단지의 사업시행자, 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SOC사업자,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의 조성토지등 양도

③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용토지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등의 양도

17.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지원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ⅰ)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산림지 및 임도용지로 양도하거나

ⅱ)제주도에 본적·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관광단지등의 조성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8.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의 취득에 대한 지원

가. 지원대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의 토지 등을 양도(양도일부터 2년이전 취득토지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①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②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의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용지

③ 기숙사건설자의 기숙사 건설용지

나. 감면세액의 추징

국민주택, 사원용임대주택,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9.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과 한국외교협회, 장학법인이 기숙사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시 양도세를 면제한다.

20.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3년이상 운영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 문화시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 문화시설 개관후 2년

내 종전문화시설을 양도하거나 종전 문화시설 양도후 1년(신축개관은 3년)내에 새문화 시설을 개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등 감면

임대주택사업자(5호이상 임대)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된 신축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포함)을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① 5년이상 일반 임대주택 :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50% 감면

②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5년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95.1.1 이후 취득하여 5연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 : 100% 감면

22. 2호이상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등 면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을 1호이상 취득하여 총 2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등을 100% 면제한다.

① 1999.8.20～2001.12.31 기간중 신축된 건설임대주택(1999.8.20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포함)

②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1999.8.20 현재 미분양된 공동주택 포함)으로써 1999.8.20～2001.12.31 기간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입임대주택

23.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원

1998.5.22～1999.12.31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분양분 포함) 및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1998.5.22～1999.6.30 : 고급주택은 감면제외, 1999.7.1～1999.12.31 : 국민주택만 감면대상에 포함)의 5년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4.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특례신설 추진(2000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예정)

2000.9.1～2001.12.31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기존주택에 대해 10%의 특례세율(1세대당 1주택 양도에 한정)을 적용한다. 감면이 적용되는 '신규취득주택'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미분양주택 포함하되 고급주택 및 미등기주택은 제외함)을 말한다. 감면요건으로는 先양도·後취득뿐아니라 先취득·後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기존주택의 양도자는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시 특례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조세감면의 배제 및 종합한도

1.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배제 요건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공공사업용토지등과 주주등으로부터 채무상환용으로 받은 수증자산제외)을 양도하거나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내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양도하거나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내 이전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다.

2.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종합한도

개인의 경우에는 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1억원(자경농지양도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의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50%(1억원이하인 경우 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다.

Ⅳ. 조세감면의 사전·사후관리

1. 조세감면평가서 등의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 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중앙행정기관장은 경제·사회정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여부 등에 의견서인 조세감면평가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 까지 재정경제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의 적립

가. 법인의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

⑴ 적립대상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법인세 상당액)를 받은 법인은 이익처분시 감면세액에서 감면분 농특세를 공제한 금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⑵ 적립방법

① 감면받은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적립(미적립시도 감면적용)

② 또는 감면이후 사업연도 최초의 처분가능이익 발생시 적립(적립금액의 20%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감면받은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적립대상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거나 세무조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되어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년도에 적립하는 경우는 20%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⑶ 적립금의 처분

이월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에 사용한다.

나. 개인의 감면세액 사용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감면세액 상당액)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감면세액에서 감면분 농특세를 차감한 금액은 ⅰ)감면후 2년 내에 상환기간 1년 6월 이상의 사채, 외화차입금,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ⅱ)감면후 5년 내에 사업용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감면세액의 자진납부

다음의 경우는 감면세액과 이자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부족적립 또는 임의처분

②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을 법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